

준법감시인 해임(퇴임)보고

회사명 :

직위	성명 (한자)	선임일자	임기만료일자	해임(퇴임)일자	해임(퇴임)사유	비고

준법감시인 선임보고

회사명 :

성명 (한자)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주요경력 ¹⁾	타담당업무 ²⁾	선임일	임기 만료일	비고

- 주) 1.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
2. 준법감시인의 업무 외에 담당하는 직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내용 및 직위를 기재

(붙임) 준법감시인 자격확인결과 1부.

(붙임)

준법감시인 자격확인 심사표

성명 (한자)	직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 ①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동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동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2.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⑦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4. 내부통제 관련 업무외의 다른 업무(감사업무 제외) 종사 여부		
<u>종합 의견</u>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인)</p>		

첨부서류 : 1) 이력서(호주 및 본적 기재, 사진부착, 본인 확인)
 2)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사본인 서류는 내용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필